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서울소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근기

서울시의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안내」
(소상공인지원과-2724, '16.2.23.)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대상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나.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다. 보증한도 : 8억원이내 (재단 및 他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 포함)

라. 지원자금

1) 서울시 경영안정자금 내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동일기업당 한도는 5억원)

2) 은행일반자금

마. 보증비율 : 50백만원이하 100%, 50백만원초과 90%(기보증 포함)

바. 보증료율 : 연 0.5% (장기보증료 선납할인 적용불가)

3. 업무처리방법

가. 보증처리절차

구 분	가. 소액심사보증 취급시 나.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일반심사보증 취급시
상담/접수	지점 보증지원팀	지점 보증지원팀
조사/실사		보증지원부 심사팀
품의/승인		
약정/실행		
사후관리		지점 보증지원팀

주> 서류접수 후 심사팀으로 송부(전자팩스 송부 후 실물서류 이관)

나. 신규 및 증액보증에 한함. 단 대상기업이 상환유예를 위해 신청한 기보증회수보증은 취급가능

(기보증회수보증 시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연계할 것)

다. 타보증 상품과의 연계 불가

라. 접수 후 최우선 처리할 것

4. 기타사항

가. 각 지점에서는 전담상담자(본부장, 지점장)가 상담전용창구를 마련하여 대상기업을 직접 상담할 것

나. 고객센터에서는 전담상담자 전화번호 안내 예정

5. 시행일 : 2016.02. .(접수일 기준)

- 붙임 : 1.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 개정후 전문 1부.
 3.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 개정전 전문 1부.
 4. 서울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명단 1부. 끝.

과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109 (2016.02.26.) 접수 ()
우 121-705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6층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14 /전송 02-3278-8117 / sptunik@seoulshinbo.co.kr / 공개